

# 제12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 3. 29.(수) 07:30
- 장 소 : 달개비(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옆)
- 참석자 : 이사 8명, 감사 1명
  - 이사 : 10명 중 8명 참석
  - 감사 : 2명 중 1명 참석

## 심의안건

- [제1안건] 2016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 [제2안건] 2016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 [제3안건] 2016 회계연도 이의잉여금 처분(안)
- [제4안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원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당연직 이사로 되신 이사님과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_\_\_\_\_ 님입니다. 서울시 \_\_\_\_\_ 님입니다. 서울시 \_\_\_\_\_ 이사님은 현재 국외출장 중으로 \_\_\_\_\_ 과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_\_\_\_\_ 근로자이사님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연구원 인사발령으로 임명되신 서울연구원 \_\_\_\_\_ 부원장님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월말일자로 원장직을 사임하셨고, 후임 원장 선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후보자 서류접수 마감이 내일(3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마감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차기 이사회에 원장 선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안건심의 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20회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2017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도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결산보고를 위한 세 개 안건과 서울시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 중에서 세 개 안건은 2016년 결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 : 의견 없습니다.

-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재무회계 결산(안),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6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017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관련사항 안내」에 의거하여 2016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 49억 원 중 2017년 사용금액 34억 원을 제외한 잔액 15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치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지출 결산(안)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원 예산액이 294억 3219만 원이고 수입액은 355억 2739만 원으로 증액요인은 수탁사업계정의 초과수입과 비예산계정의 기타수입이며, 지출액은 305억 5373만 원으로 잔액은 49억 7365만 원입니다. 결산잔액 처분(안)으로 잔액 49억 7365만 원 중 2017년도 계속 사용할 34억 7365만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수입·지출 결산(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입니다.  
의결주문 2016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연구원 정관 제11조 및 회계규정 제86조 규정에 의거 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2016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내역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결산절차는 서울연구원은 결산을 실시하고, 외부 회계법

인에 결산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조치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재무회계 결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규모는 191억 3409만 원으로 전기 대비 10% 증가를 했고, 기금예금 11억 원 증가와 퇴직예치금 5억 6260만 원 증가가 요인입니다. 부채는 84억 2057만 원으로 전기 대비 6% 증가를 했고 퇴직급여충당부채 4억 348만 원 증가가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자본은 107억 1351만 원으로 전기 대비 13% 증가를 했고 기본재산 6억 원 증가와 당기순이익 12억 원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손익실적입니다. 결산결과 12억 5958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출액의 증가와 수탁사업에 투입된 수탁원가의 감소가 요인입니다. 사업외 수익인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추세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입니다. 의결주문 2016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사유는 정관 제12조 및 회계규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69억 원 정도가 있고, 그 중에 기본재산 등 이입액과 이익잉여금 처분액 그리고 차기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에 의거 환입하는 내용이고, 별첨자료의 이익잉여금 처분(안)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이사회 승인으로 잉여금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첨자료를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안)입니다.

기본재산 등 이입액에 근로복지금 환입이 있는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기금 2억 5000만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환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으로 이자수입 중 2억 4938만 원을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환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기금 전출로는 2016년 결산잔액 15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출은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였으며, 2016년 이사수입 1억 6685만 원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질의하기 전에 본 안건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안건으로 연구원에서 지난 2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전 검토를 해주신 :님으로부터 결산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 예, 상정안건 세 건에 대해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받아 봤고, 재무제표의 수치에 있어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잘 하셨을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결산자료에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자산이 전기 보다 17억 원 증가하였고, 자본도 12억 원 증가했습니다. 손익실적을 보면 12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입·지출 결산(안)부터 보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인데 49억 원의 결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5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용예정 34억 원을 차감한 15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적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감사의견을 보건대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전기보다 증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특히 자본 증가에 의한 자산의 증가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손익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12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손익실적을 따진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잘 운영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익 발생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관에 유보된 이익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기순이익을 합쳐서 69억 원 중에서 기금으로 15억 원을 처분하고, 근로복지기금 2억 5000만 원을 이입합니다. 근로복지기금 폐지는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문제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사내복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에 의해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세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 개선계

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던 것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불안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폐지하게 된 원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서울시 관계자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 :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보완책이나 대비책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장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이 공기업담당관에서 시달되어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서울시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님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 상황에 있고, 출자출연법이나 그쪽과 관련해서 전에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해석 자체가 맞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5%를 넘는 경우에 적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경우는 당기순이익 규모로 봤을 때 규모가 적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법규에 배제되어 있고, 이번 안건 자체가 서울연구원 직원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그 전의 복지체계를 예산편성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을 안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연구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지침 또는 상위 법률에 맞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고, 서울연구원뿐 아니라 서울시 산한기관이 같이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요는 있으니까 예산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사님들이 연구원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 내용이니 이사회보다는 연구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안정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전기 이익잉여금이 57억이고,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7억 인데, 회계연도하고 연구기간이 안 맞아서 생기는 사항인가요?
- : 예,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중에 남긴 것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 : 아니요, 미처분 이익이영금이 전기 57억, 차기이월도 57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연구기간이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그 부분을 이익으로 본 것인지? 남아 있는 연구비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이익으로 본 것인지?
- :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누적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총 누적되어있는 당기순이익

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입된 부분도 있을 것 있고, 그것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억 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총 누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 : 연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 : 아닙니다.
- : 이익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로 수탁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수탁사업계정 23억이 이익이 된다고 했잖아요, 연구 과제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연구 과제를 5억으로 책정해서 연구원에 줬다고 하면 가급적 전액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사용해주기를 기대할 건데, 1억을 떼고 4억만 가지고 연구 수행을 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비를 떼고 있나요?
- : 예, 간접비가 있습니다. 수탁사업비로 받아온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해 발생한 상황은 수탁연구예산 자체가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탁연구예산 경우는 과제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수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 예산 대비 실제 수탁 과제 많았다는 말이군요.
- : 37억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55억 이었는데 수탁사업

이 95억 정도로 늘어날 만한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어떤 사업들이 늘었는지?

- : 작년에 수탁사업이 그 전년 예산 잡을 때보다 많았고요. 한 예로 교통연구실의 경우 교통조사 같은 경우 금액이 크고요. 예상은 되고 있지만, 예산 잡을 때부터 들어온다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매년 수탁 예산은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잡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들어 올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결국은 이런 경우는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인가요? 예산상으로 보면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간접비가 많아지게 되고, 수익도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일부는 기금,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 예년에 비해 2016년도에 조금 많았고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산 관련 세 개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음 안건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결주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

다. 제안사유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 근로복지기금 중 잔액을 전입하여 복리후생비(대학생 자녀 학자금)로 활용하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근거는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 알림이 서울시로 부터 왔습니다. 서울연구원 사내복지기금 개선 계획 그리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계획 알림 및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추가예산 88,000천원, 경정예산 5,220천원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시행일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자료를 보시면, 수입·지출예산(안) 내역이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가 무엇인가요?
- : 기관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관운영행사비에서 청렴자율준수제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는데 왜 예산이 필요한가요?
- : 청렴에 대해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 강사의 강사료입니다.

○ :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나요?

○ : 네, 그렇습니다.

○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어느 정도나 해주나요? 전액을  
다 해주나요?

○ , : 대출을 원하는 직원은 모두 가능합니다. 전  
직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 대출이라고요? 보조가 아닙니까?

○ : 무이자 대출입니다.

○ : 그럼 보조는 없습니까? 대출만 있나요?

○ : 보조는 없고, 대출만 있습니다.

○ :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 :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 : 대출이 꽤 많네요?

○ : 상환 전의 액수이고요.

- :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 3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마지막 안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입니다. 의결주문서울특별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사유는 임원추천위원 위원 추천 의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서울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가 임명될 때까지이고, 주요임무는 후보자 서류 및 면접심사와 후보자 추천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님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새로운 제도 같아요? 원장 때는 어땠나요?

- : 원장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 전에는 추천을 통해서 했는데, 2014년도에 출자출연법이 개정되어 이번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면,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나요?
- : 조직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면,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요.
- : 이사회와 이사 중에서 추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인지요?
- : 이사 중에서는 할 수 없나요?
- : 네,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 : 원장 후보가 복수로 올라오는 거죠?

-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예정 인원의 두 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연구원에서도 처음 따르는 절차인데요. 연구원 쪽에서는 연구원의 시각으로 후보를 찾아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을 거쳐 가신 훌륭한 분들 중에서, 연구원 주요보직자, 원장, 부원장, 기획실장이든 역임한 분들 중에서 연구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을 연구원 출신 중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 '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혹시라도 연구원을 거쳐 가신 사람 중에서 앞으로도 연구원 출신이 원장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원 출신 중에서 관습처럼 되면, 이사회 추천이 그 사람들만 된다고 하면, 이사회 추천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사장님 말씀도 맞긴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해서 나중에 관례가 되면 연구원 출신 중에서만, 이사회에서 하는 것 같아서 원칙처럼 되면 저는 조금 객관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자체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연구원을 봐야하고 하는 입장인데, 연구원장을 모시는데 연구원 출신들이 한다는 것이 판단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이사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당히 폭넓게 여러 시각을 가지고, 시장은 시장 입장에서, 의회는 의회 입장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도 추천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추천하라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연구원이 해온 일, 앞으로 할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있는

사람을 추천위원회 7명 중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공개모집 과정에서 원장 자격기준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근무,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연구원에 연구위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자격기준이 너무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문호를 넓게 개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고양시정 연구원이 얼마 전에 발족 했는데 대학교 정교수 5년 이상, 선임 위원급 5년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연구원이 고양시정연구원 보다 기준이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연구원에 원장님 오시는 것을 보면, 전임 원장님도 그렇고요, 차관도 지내지고 보통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서울시에서 자격기준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할 수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이사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주요 보직을 거치신 분들은 보직자의 시각에서만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도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이윤추구나 생산성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아실현 추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터전으로서의 직장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주요 보직을 지내신 분도 좋지만, 연구원 생활도 해보고, 책임 박사도 해보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선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저는 두 분 의견은 다 좋은데요. 저는 추천위원회가

이사회 추천이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게 또 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은 예외로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회나 일반 쪽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울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저희도 참여 하는 것이 사실은 서울연구원 출신으로 참여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서울연구원 출신들 중심으로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 : 이사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시장 추천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연구원장을 추천한 것은 처음이고, 연구원도 처음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에 대해서는 몇 분의 이사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과 후보를 정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 소위원회 구성하더라도 전체 이사회의 의견이 있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사님들 의견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사회는 연구원을 잘 아는 상황에서 추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만 논의하고 추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연구원을 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이사님을 하셨던 분을 추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연구원과 너무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기준을 너무

넓게 잡으면 의회나 시와 겹칠 수도 있거든요.

- : 이렇게 원칙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사회 추천이라는 것은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고, 연구원을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정하지는 말자는 의견입니다.
- : 이사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꼭 연구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쉽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 사실 이런 문제는 관례적으로 보면, 이사장님의 실무진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사회에서는 추천한 사람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이사장님과 이사님 두 분 정도 해서 기준에 맞는 분을 실무진과 의논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사님들과 감사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님과 이사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 : 이의 없습니다.
- : 그러면 회의를 마친 후에 두 분 이사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기금운영보고 및 2017년 이사회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에 대해 본부장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네, 기금운영보고입니다.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금은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은 20억 원이었으나, 2016년 결산이사회의 이익잉여금 11억 원 처분으로 현재 기금은 31억 원이 있습니다. 금년 회계결산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15억 원을 전입하여 총46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017년도 이사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 근거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운영방향은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 이사회 전문성 활용 극대화 그리고 주요현안 보고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지도조언 강화, 이사회 개최시기 정례화로 참석률을 제고하자 합니다.
- 운영일정은 3월 정기이사회는 오늘이고, 임시이사회는 4월에 원장 선임(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정기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 기금운영과 2017년 이사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항은 앞선 결산안건과 연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겠고, 연구원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 우리은행하고 거래 하는 것은 서울시 주거래은행이라

서 그런가요?

- : 네, 그렇습니다.
- : 이자율은 경쟁시키면 안 되나요? 요즘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조금 분산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 은행 선정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 : 우리은행에서 기부금을 냅니까?
- : 아니요. 없습니다.
-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오늘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20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17. 3. .**

**이사장 :**

**이    사 :**

**감    사 :**